

정정신고(보고)

2017년 5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클래식중국본토중소형FOCUS연금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2.13
3. 정정 내용 :
- 환헤지 문구 정정, 문구 명확화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③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운용하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한다. 다만, 중국 위안화 표시 자산에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미국달러화를 활용하여 환헷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화-달러화 헷지는 달러화와 위안화간의 상대적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해외투자로 인한 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피하지는 못할 수 있다. 또한 원화-달러화	③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환헷지 전략(이종 통화간 교차 헷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를 활용한 헷지를 포함)의 수행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환헷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헷지 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상황, 투자신탁의 규모, 해당 통화 거래의 기초 여건 및 환헤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헷지 전략도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p>	<p>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p>
제36조(투자대상 등)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2.(생략) (추 가)</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2.(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제42조(투자신탁의 해지)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생략) (추 가)</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환헤지 문구 정정 등)